

문경시민체육대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대회는 시민의 체위향상과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신인선수를 발굴하여 교육적 호응을 진작시킴과 아울러 국가체육 진흥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개최한다.

제2조 (주최, 주무, 주관) 본 대회는 문경시체육회가 주최하며 각 연맹협회가 주관이 된다.

제3조 (후원단체) 본 대회의 후원단체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 (경기부문) 본 대회의 경기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보급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를 시범경기로 참가시킬 수 있다.

제5조 (참가범위 및 경기방법) 본 대회에서 각 읍·면·동 체육회 및 시내 초·중·고 각 급 학교가 참가할 수 있으며 경기방법은 각 학교 읍·면·동 대항으로 한다.

제 6 조 (선수자격)

1. 각 학교별 대항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에 한하고 휴학생, 재수생은 인정하지 않는다.
2. 각 읍·면·동 대항에 있어서는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자에 한한다. 단, 문경 관내에서 이동한 자로서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2 장 참가신청

제7조 (신청방법) 각 대항에 출전한 학교, 읍·면·동 대항은 개최요강에 의하여 결정 기일 내에 주최 측에 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 (개최요강) 본 대회 개최요강은 대회 1개월 전에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3 장 경기 및 심판

제9조 (순위결정) 본 대회의 경기는 본 대회의 채점규정에 의하여 그 순위를 결정한다.

제10조(시상) 본 대회의 시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경기부분 시상: 시민체육대회 채점내규에 따른다.
- 2.비경기부분 시상: 응원상을 비롯한 비경기 부분 시상은 대회장이 지명하는 5인 이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 (심판)

1. 경기 진행에 이의가 있을 시는 당해 주심이 처리한다.
2. 주심 판결의 상소는 심판장이 이를 처리한다.

제 4 장 대회임원 및 부서

제12조 (대회임원) 본 대회의 임원은 회장단에서 선임 위촉한다.

제13조 (부서) 본 대회의 운영부서는 회장단이 결정한다.

제 5 장 소청처리

제14조 (소청심의) 본 대회에 참가한 임원·선수 및 응원단에 부정한 사실이 있거나 또는 이에 대한 소청이 있을 때에는 소청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한다.

제15조 (소청위원회) 소청위원회는 임원장 및 본회에서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대회임원을 동위원회에 참석 시킬 수 있다.

제16조 (처리) 전항의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처리를 할 수 있다.

1. 제명처분
2. 기한부 출전정지 및 자격정지
3. 잔여경기 몰수
4. 실격
5. 견책

부 칙

제 1조 본 규정은 1996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칙(2023.08.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민체육대회 경기운영내규

제 1 장 총칙

제1조 본 내규는 문경시민체육대회 규정에 의거 경기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경기운영

제2조 문경시민체육대회(이하“본 대회”라 칭함)의 모든 경기는 해당 경기통합단체 책임 하에 이를 진행한다.

제3조 본 대회의 경기일정은 주최측이 결정한다.

제 3 장 경기방법

제4조 본 대회의 경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1. 기록경기
 - 가. 개인 기록경기 : 육상경기(트랙, 필드)
2. 토너먼트 경기
 - 가. 단체경기 : 씨름, 족구

제5조 토너먼트 경기의 대진은 팀 대표자의 추천으로 결정한다.

제6조 토너먼트 경기에 있어서는 순위전 (3.4위전, 5.6위전, 7.8위전)은 행하지 아니하고, 무승부일 경우에는 참가요강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해당경기 종목별 경기 규칙에 의거하여 승부를 결정한다.

제 4 장 경기기록관리

제7조 본 대회의 모든 경기기록은 주최측이 제정한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해당 경기단체의 경기부장과 기록책임자가 확인 서명하여 대회본부기록부장에
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 5 장 심판 및 소청

제8조 본 대회의 경기심판은 해당 경기단체의 심판규정에 의하되 그 경기단체
가 지정한 심판이 담당한다.

제9조 본 대회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처리되지 아니하였거나 기타 심판부의 권
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회 소청위원회가 처리한다. 소청서는 총감독이
서명한 서명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소청위원회에서는 총감독과 해당 경기단체의
심판부장만이 참석한다.

제10조 대회본부 소청위원회의 판결은 최종판결이며 판결에 대한 이의서는 제출
할 수 없다.

부 칙 <2004.09.01>

제1조 본 내규는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0.05>

제2조 본 내규는 2018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8.2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민체육대회 채점내규

제 1 장 총칙

제1조 본 내규는 문경시민체육대회 규정에 의거 팀수 순위결정을 위한 채점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팀별 각 경기 부문별로 채점하고 전 종목 종합 채점한다.

㉠. 경기종목

- 초등부 : 육상경기(트랙, 필드), 씨름
- 중·고등부 : 육상경기(트랙, 필드)
- 읍·면·동부 : 육상경기(트랙), 씨름, 족구

제 2 장 채점

제3조 ㉠ 초·중·고등부 육상경기는 트랙과 필드로 구분하여 채점한다.

㉡ 읍·면·동 육상경기는 트랙으로 채점한다.

제4조 팀별 종합순위는 경기 부문별로 획득한 점수의 총계로 하고 각 경기부문의 팀별 채점은 득점의 총계로 순위를 정하며 팀 순에 따라 배점하고 순차적으로 가산하여 배점한다. (예: 7개팀 일 경우 1위 7점)

제5조 팀별 종합 및 경기 부문별 총득점이 동점이 있을 때에는 1위 경기 부문수가 많은 팀을 상위로 하고, 1위 경기 부문수가 같을 때에는 2위 경기 부문수가 많은 팀을 상위로 하고, 2위 경기 부문수가 같을 때에는 3위 경기 부문수가 많은 팀을 상위로 한다. (단, 경기부문이라 함은 각 경기종목을 말한다. 육상경기 부문의 순위는 트랙, 필드, 마라톤 득점 합계로 정한다.)

제6조 부득이한 경우 순위전을 행하지 못할 때에는 동위자수에 해당 하는 차위 점수를 합산하여 이를 동위자수로 등분 배점한다.

제7조 동위자가 2명이상일 때에는 해당 동위점수와 동위자수에 해당하는 차위 점수를 합산하여 이를 동위자수로 등분 배점한다.

제8조 기권, 몰수 또는 불출장할 때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0점으로 한다. (단, 경기규칙에 따라 경기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의 기권과 경기 몰수는 해당 경기단체가 결정하되 채점여부는 해당 경기단체의 사유서를 소청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 각 경기 부문별 채점은 경기단체(경기기록 책임자) 책임하에 채점하되 대회본부 기록부의 채점기록과 대조 확인하여 기록부장에게 제출한다.

제10조 토너먼트 경기의 종별(체급별)채점은 별표와 같이 배점한다.

제 3 장 기록경기채점

제11조 기록경기의 채점은 경기종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 육상경기

가. 육상경기 채점은 세부종목별 6위까지의 입선자만 채점한다.

등 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배 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나. 육상경기 부문은 트랙, 필드, 마라톤을 각각 1개 경기부문으로 간주 하여 배점한다.

다. 마라톤은 골인한 순위별 역순으로 채점하여 합계한다.

※ 토너먼트 채점표

가. 씨름, 족구경기 4팀이 출전하였을 경우.

등 위	1위	2위	공동 3위	
배 점	4점	3점	1.5점	

나. 씨름, 족구경기 5팀이 출전하였을 경우.

등 위	1위	2위	공동 3위	5위
배 점	5점	4점	2.5점	1점

다. 씨름, 족구경기 6팀이 출전하였을 경우.

등 위	1위	2위	공동 3위	5, 6위
배 점	6점	5점	3.5점	1.5점

라. 씨름, 족구경기 7팀이 출전하였을 경우.

등 위	1위	2위	공동 3위	5, 6, 7위
배 점	7점	6점	4.5점	2점

제12조 본 규정에 있는 채점상 문제가 있을 시는 채점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제13조 채점처리위원회는 본회 부회장단 및 임원장으로 구성한다.

부 칙<2004.09.01>

제1조 본 내규는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0.05>

제1조 본 내규는 2018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9.25>

제1조 본 내규는 201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8.2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